

[일련번호 : 20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수의계약 시 예산 절감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입찰 및 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 추진계획」 등에 따라 계약 시 예산 절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입찰 및 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 추진계획」 (재무과-1176, 2012. 1. 27.)에 의하면 일상경비 집행권한의 위임 확대에 따라 사업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발주부서에서 직접 집행 시에는 수의계약 시담시 방침으로 정해진 기초금액별 사정율에 의거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지출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, 「양천구 계약업무 개선 방안」 (재무과-7415호, 2013. 4.16.)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 기초금액별로 사정율을 강화하여 통상 사정율은 하한율로 적용하고 견적가격이 평균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상한선을 적용하며, 수의계약 시담시 기초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준 사정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.

구분	기초금액	사정율	계약심사	일상감사
공사	1천만원 이상	10 ~ 12%	공사	종합공사 3억 기타공사 2억
	7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	7 ~ 9%		
	5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	6 ~ 7%		
	5백만원 미만	5 ~ 6%		
용역 물품	1천만원 이상	10 ~ 12%	용역	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
	7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	7 ~ 9%		
	5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	6 ~ 7%		
	5백만원 미만	5 ~ 6%	물품(4백이상)	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수의계약(물품 5백만원 미만) 시담시 기초금액에 대해 표준 사정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] 수의계약 시담 시 표준 사정율 미적용 내역

연번	계약일자	건명	계약금액(원)	최소절감액	지적사항
1	20221128	동 *** **** 홍보물품 구입비 지출	700,000	35,000원 (13,000원 절감)	표준 사정율 미적용(5~6%)
2	20221206	동 *** **** 홍보물품 구입비 지출	1,985,000	99,250원 (0원 절감)	표준 사정율 미적용(5~6%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